

제152회 군산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군산시의정회
지원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1년 11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1005호

군산시의정회지원조례 폐지조례안

「군산시의정회지원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1년 11월 15일

군산시 규칙 제492호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조례안 예고)의장은 의안심사 대상 중 조례안에 대하여는 5일이상의 기간 동안 그 조례안의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군산시의회 홈페이지에 예고할 수 있다.

제57조(위원회의 심사)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제1항의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안의 제출 범위) (생략)	제19조(의안의 제출 범위) ① (현행과 같음)
<u><신설></u>	②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위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u><신설></u>	제19조의2(조례안 예고)의장은 의안 심사 대상 중 조례안에 대하여는 5일 이상의 기간 동안 그 조례안의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군산시의회 홈페이지에 예고할 수 있다.
제57조(위원회의 심사)	제57조(위원회의 심사)
①~③ (생략)	①~③ (현행과 같음)
<u><신설></u>	④제1항의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주민 청구조례안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 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1년 11월 15일

군산시 규칙 제493호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맛집의 지정절차 등) ①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맛집으로 지정 신청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맛집 지정신청서를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정 신청과는 별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맛집 지정 신청업소로 본다.

1. 음식의 맛 등이 우수하다고 읍·면·동장이 추천한 업소
2. 음식의 맛 등이 우수하다고 한국음식업중앙회 군산지회에서 추천한 업소
3. 기타 설문조사 등으로 맛 등이 우수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업소

③ 시장은 맛집 지정신청 또는 추천을 받은 때에는 제6항의 현지평가표에 의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5명 이내의 심사위원을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구성한다.

⑤ 시장은 심사위원이 제6항의 맛집 선정 현지평가표에 의한 채점결과 평균 85점 이상인 업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맛집 지정증과 별표3에 따라 제작한 맛집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맛집 지정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 군산 맛집 선정 현지평가표는 별표2와 같다.

⑦ 맛집으로 지정을 받은 업소는 시장이 교부한 맛집 표지판을 업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3조(지정시기) 맛집으로 지정을 받기 위하여는 개업후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양수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계는 1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심사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맛집 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지정 취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신청 할 수 있다.

제4조(지정의 재심사)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맛집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정기적으로 지정의 적합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심사는 별표2의 현지 평가표에 의하여 제2조제5항의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③ 시장은 지정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의 정기적 재심사와는 별도로 수시로 적합여부를 재심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지정의 취소)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맛집 지정서 회수

2. 맛집 지정표지판 회수

3. 그 밖에 해당업소에 대한 맛집 지정에 따른 지원의 중지

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맛집의 영업자 또는 운영자는 그 지정증 및 표지판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증의 재교부) ①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는 단순히 업소의 상호가 변경되거나 영업자가 제7조의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정증의 재교부를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게 한 후 지정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맛집 지정의 특례) 맛집 지정업소 영업자가 1명에서 공동명의자로 변경되거나, 공동명의자로 일부가 변경되더라도 당초 지정 당시의 영업자가 공동명의자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맛집 지정업소로 본다.

제8조(표시의 제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맛집이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맛집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시행규칙 제정 전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는 이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 관리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군산 맛집 지정 신청서

업 소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영업형태		전화번호	
소 재 지			
음식의 종류		주 취급음식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군산 맛집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일 월 년

신청인 : (인)

군산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군 산 맛 집 지 정 증

업 소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영업형태		전화번호	
업소소재지			
음식의 종류			
지정사항 변경내역	☐ ○○○○ . . . 재심사 ☐ 2011. . . 재심사		

위 업소를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군산 맛집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별지 제3호 서식]

군산 맛집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

업 소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영업형태		전화번호	
업소소재지			
음식의 종류			
재교부 사유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군산 맛집 지정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별표 1]

맛집 지정기준

배점순위	평 가 항 목	비 고
1	음식이 맛이 있는 업소	
2	메뉴가 너무나 다양하지 않고 전문적인 업소	
3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고 접근성이 용이하여 쉽게 방문 할 수 있는 곳	
4	음식재료의 신선도를 우선하는 곳	
5	같은 음식 메뉴라도 다른 음식과 차별화된 곳	
6	위생상태 및 친절도	
7	재방문 요소 겸비 및 영업주의 경영마인드	

[별표 2]

『군산 맛집』 선정 현지 평가표

☐ 업소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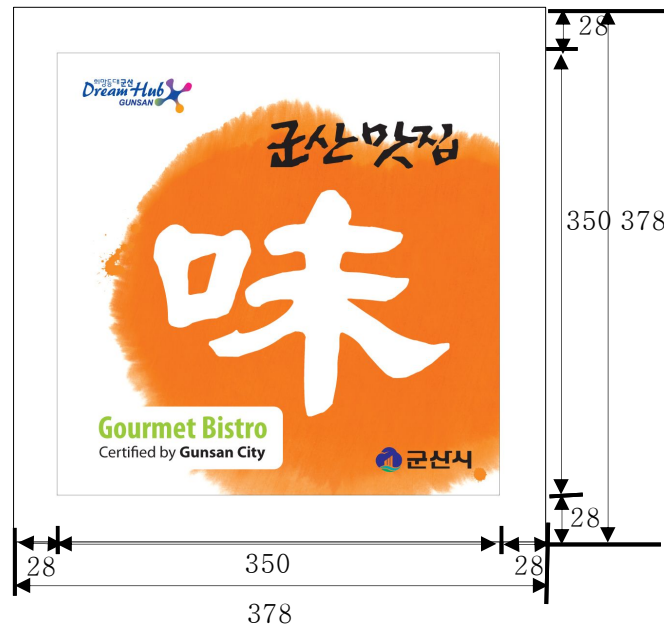
상 호		주메뉴		대표자	
소재지				전 화	

☐ 평가표

구 분	항 목	세부항목	배점기준								총 점
	배 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조리 부분 (70)	맛(50)	주 메뉴의 모양 및 맛 (40)	40	39	37	36	34	33	31	30	
		부·후식의 모양 및 맛 (10)	5	4	3	2					
		주 부식 차림의 조화 (10)	5	4	3	2					
	조리기술 (20)	재료의 특성과 조화 (10)	10	9	8	7	6	5	4	3	
		이용객의 호응도(대중성) (10)	10	9	8	7	6	5	4	3	
환경 및 접객 부분 (30)	영업환경 (20)	내외부 환경 및 주방 청결도 (5)	10	9	8	7	6	5	4	3	
		접근성 및 편의시설 등 (5)	10	9	8	7	6	5	4	3	
	접객마인드 (10)	손님응대 친절도 (10)	10	9	8	7	6	5	4	3	

☐ 평가자 의견

[별표 3]

군산 맛집 표지판 규격 및 도안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1년 11월 15일

군산시 규칙 제494호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중수도 설치 운영자는 상수도 사용량중에서 중수도 사용량의 20%를 공제하여 수도요금을 부과(단, 감면량은 상수도 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음)

- (1)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서[별지 17호 서식]와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계측장치는 중수도 설치 운영자가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설치하고, 봉인은 시장이 한다.
- (3) 계측장치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설치운영자가 즉시 원상복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4) 수도요금을 감면받는 중수도 설치 운영자가 폐업, 가동중지 등으로 인하여 감면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감면을 취소하고, 폐업, 가동중지 시점에서 요금을 추가 징수한다.

- (5) 중수도 사용량은 상수도 사용량 검침시 병행 검침한다. 검침 및 사용수량 적용등에 관하여는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별지 제17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7호 서식]

중수도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수용가 현황	수용가번호		성명	
	주소			
	구경		업종	
중수도 현황	소유자성명			
	주소			
	시설용량	m ³ /일	중수도 설치 연월일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4조 및 동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주소 :
전화번호 :

군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 중수도 설치 확인서 1부.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및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 ----- ----- ---
1. 조례 제34조제1항제1호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감면	1. ----- -----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신설>	나. <u>중수도 설치 운영자는 상수도 사용량중에서 중수도 사용량의 20%를 공제하여 수도요금을 부과(단, 감면량은 상수도 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음)</u>
	(1) <u>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서[별지 17호 서식]와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2) <u>계측장치는 중수도 설치 운영자가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설치하고, 봉인은 시장이 한다.</u>
	(3) <u>계측장치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설치운영자가 즉시 원상복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4) <u>수도요금을 감면받는 중수도</u>

2. ~ 5. (생략)

② (생략)

설치 운영자가 폐업, 가동중지 등으로 인하여 감면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감면을 취소하고, 폐업, 가동중지 시점에서 요금을 추가 징수한다.

(5) 중수도 사용량은 상수도 사용량 검침시 병행 검침한다. 검침 및 사용수량 적용등에 관하여는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2.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군산시 공고 제2011-1841호

공 고

군산시관용차량관리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관용차량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7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2012년 지방자치단체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작성지침이 시달되어 정수관리대상 자동차 규정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차량 교체가능 조건 강화(안 제13조)

- 1) 내용연수 7년 및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 두 조건 모두 충족시 교체 가능

나. 승용차량 기준정수 조정 (안 제4조 별표 2)

- 1) 업무의 다변화와 출장업무 증가로 현실에 맞게 기준정수 상향 조정
- 2) 자동차관리법 개정(2011.5.24)으로 승차인원 10인이하 차량이 승용자동차에 포함

다.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 개정

3.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12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회계과(전화063-450-4272, 팩스063-452-816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회계과 계약담당자
계약담당 (전화063-450-4272)에게 문의하여 주시시기 바랍니다.

군산시관용차량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관용차량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관용차량관리규칙”을 “군산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관리에 관하여”를 “관리에”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의한”을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폐로 인하여 당해 기관”을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기관”으로 한다.

제7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타의”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 따라”로, “제1호서식에 의하여”를 “제1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에 의한”을 “규정에 따라”로 “당해 기관의”를 “해당 기관의”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의하여 총괄 기관”을 “따라 총괄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 차형변경은 당해”를 “따라 차형변경은 해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의하여 총괄 기관”을 “따라 총괄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초과한 경우”를 “초과하고,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총주행거리가 12만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단, 특수차량은 제외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는 경우

제14조 중 “의하여 당해”를 “따라 해당”으로, “요청 하여”를 “요청하여”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1”을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6조 중 “소요예산”을 “필요한예산”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조 제4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제7서식에 의한”을 “제7호서식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의한 서류를 비치하여야하며”를 “따라 서류를 갖추어두어야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밖에”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밖에”로 한다.

제32조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별표 1] 차량의 차종별·차형·배정대상 및 내구연한 중 최단운행기준연한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1. 승용차량 기준정수 중 기준정수 차형별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2. 승합용차량 기준정수 중 배정대상·차형 및 대수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군산시관용차량관리규칙</u>	<u>군산시 관용차량 관리규칙</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관용차량의 <u>관리에</u>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관리에</u> ----- ----- -----.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산시 각 단위기관이 관리·운영하는 <u>자동차관리법</u> 에 의한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제3조(적용범위) ----- ----- --- 「 <u>자동차관리법</u> 」----- ----- -----. -----.
제5조(정수배정) ①단위기관별 차량정수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단위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제5조(정수배정) ①----- ----- 따 라 ----- ----- ----- ----- ----- -----.
②단위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u>개폐로</u> 인하여 당해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	②----- ----- <u>개정 또는 폐지로</u> <u>인하여</u> 해당기관 -----

되거나 다른 단위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7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① 단위기관이 6월이상 5년미만의 한시적인 공사·조사 또는 외국기관등과의 협력, 기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차종변경 승인) ①단위기관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종변

-----.

제7조(정수번호 부여) -----

----- 따라 -----
-----.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①

----- 그 밖에-----

-----.

②----- 규정에 따라 -----

-----제1호서식에 따라-----

-----.

제11조(차종변경 승인) ①-----

-----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

-----.

②-----규정에 따라 -----

경은 당해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2조(차형변경 승인) ①단위
관의 차형변경은 승합용·화물
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
하여 총괄 기관의 장에게 요청
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형변경은 당해 단위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등으로 동일 차종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3조(차량교체 승인) ①단위기관이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총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
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해당기관의

제12조(차형변경 승인) ①-----

따라 총괄기관-----
-----.

②----- 따라 차형변
경은 해당 -----

제13조(차량교체 승인) ①-----

----- 따라 총괄기관 -----

-----.

②----- 따라 -----
----- 각호
의 어느 하나-----
--.

1. 차량의 운행기간이 내구연한을 초과한 경우

2. (생략)

3.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총주행거리가 12만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승용차·소형승합차 및 소형화물차에 한한다) 이거나 또는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는 경우

4. (생략)

제14조(차량교환의 승인) 지방자치단체의 단위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 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
---- 초과하고,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총주행거리가 12만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단, 특수차량은 제외할 수 있다)

2. (현행과 같음)

3.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는 경우

4. (현행과 같음)

제14조(차량교환의 승인) -----

----- 따라 해당 -----

----- 요청하여 -----
-----.

제15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

----- 호의
어느 하나-----

1. · 2. (생 략)

3. 기타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
다고 인정한 경우

제16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
위기관의 장은 차량 총괄기관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 받
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
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제19조(차량의 등록절차) ①총괄
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
정하거나 차종 변경 · 차형변경
· 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
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
인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
보하고,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해당 관할등
록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기관의 장은 승인차량
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
가 필요한 때에는 동 승인확인
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
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등록관청은 차량의 등록신청

---.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제16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

----- 필요한예산-----

-----.

제19조(차량의 등록절차) ①----

----- 별지 제5호서식 또
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

-----.

② (현행과 같음)

③-----

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동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기관의 장은 20일이내에 별지 제7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당해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차량 관리방법) ① (생략)

②집중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기타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③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2차 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

제26조(기록관리) 차량 총괄기관

--- 따라 -----

----- 해당 -----

-----.

④----- 따라 -----

-- 제7호서식에 따라 -----
----- 해당 -----

제21조(차량 관리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해당 -----

-----.

③----- 따라 -----

-----.

제26조(기록관리) -----

의 장은 제1호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하여야하며 단위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단위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개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 5. (생략)

6. 기타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27조(차고운영)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기관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인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8조(지도·점검 등)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 2. (생략)

----- 따라 서류를 갖추어두어야하며 -----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

제27조(차고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1명-----
-----.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지도·점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각 호-----
-----.

1. · 2. (현행과 같음)

3. <u>기타</u> 차량관리 ·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3. <u>그 밖에</u> ----- -----
제32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 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사고보고)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u>기타</u> 조치 및 요구사항	7. <u>그 밖에</u> -----

[별표 1]

차량의 차종별·차형·배정대상 및 내구연한 (안 제4조 관련)

차 종	차 형	배정대상	최단운행 기준연한
승 용 (전 용)	대형승용차 (배기량 2000cc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배기량 2,000cc 이상 · 시 장 · 부시장 · 시의회시장	차량의 최초등록일부 터 7년간
승 용 (의전용)	대형승용차	○ 배기량 2,500cc 미만 · 시 본청	차량의 최초등록일부 터 7년간
승 용 (업무용)	중형승용차 (배기량 1,500cc이상 2,000cc미 만의 차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배기량 2,000cc 미만 · 단위부서 · 시 본청 · 시 의회	차량의 최초등록일부 터 7년간
	소형승용차 (배기량 1,500cc미만 인 차량을 말 한다)	○ 단위부서	
	경형승용차 (배기량 1,000cc미만 인 차량을 말 한다)	○ 단위부서	
	짚형 또는 다목적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으 로 분류되는 각종 차량을 말한 다)	○ 단위부서	

승합용	대형승합차 (승차정원이 36인이상인 차량을 말한다)	○ 단위부서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8년간
	중형승합차 (승차정원 이 16인이상 35인 이하의 차량을 말한다)	○ 단위부서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간
	소형승합차 (승차정원 이 15인이하인 차량을 말한다)	○ 단위부서	
	경형승합차 (배기량 1000cc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 단위부서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간
화물용	대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5톤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이상인 차량을 말한다)	○ 단위부서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간
	중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1톤초과 5톤미만 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 단위부서	
	소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1톤이하인 차량을 말한다)	○ 단위부서	
	경형화물차 (배기량 1000cc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 단위부서	

특수용	청소차	○ 단위부서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간
	구급차	○ 단위부서	
	분뇨차	○ 단위부서	
	진료차	○ 단위부서	
	이동수리차	○ 단위부서	
	트럭트렉타	○ 단위부서	
	트레일러	○ 단위부서	
	렉카차	○ 단위부서	
	소방다목적차	○ 단위부서	
	기타소방차	○ 단위부서	
	기타특수차	○ 단위부서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5조제1항 관련)

1. 승용차량 기준정수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		기준 정수	차 형 별		
			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소형·경형 및 중형·다목적 승용차
시 본 청		19대	1대(시장전용 1대)	2대(부시장전용 1대, 업무용 1대)	16대
4급기관장 사 업 소	정원 200명 이상	4대		2대	2대
	정원 100명 이상 200명 미만	3대		1대	2대
	정원 100명 미만	2대		1대	1대
5급기관장 사 업 소	정원 30명 이상	1대			1대
지방의회	의회사무국	3대	1대(의장전용 1대)	1대(의전용 1대)	1대

2. 승합용차량 기준정수

사 업 별	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통 근 용	가. 본청 : 통근인원, 통근거리, 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속공무원 정원 100명당 1대를 기준으로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나. 기타기관 : 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당해 기관의 기능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교육훈련용	교육인원·교육횟수·운행거리에 따라 수송인원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기타사업용	각종 설비탑재, 지도·단속공무원 수송등 특수업무분야에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군산시 공고 제2011-1844호

「전라북도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1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재난관리기금 적립·운영의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의 의무 예치율이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15이상”으로 조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11. 6. 27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11. 6. 27. 개정·시행됨에 따라 의무예치율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15이상”으로 변경함(안 제3조)
- 나. 「지방재정법, 국가재정법시행령, 은행법」의 법조항 변경사항 정비함(안 제4조)
- 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가 삭제됨에 따라 이에 맞춰 규정을 정비함(안 제6조)
- 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법조항 변경사항 정비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단체 또는 개인)는 **2011년 11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군산시장 (참조 : 재난관리과장 ☎ 450-4492, FAX: 450-6406, e-mail : a36936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기금은 다음 각호의”을 “기금은 다음 각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로 하고, “기금의 운용수입”을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수입”으로 하고, “기타 잡수입”을 “그밖에 잡수입”으로 한다.

제3조 중 “시장”은 “군산시장(이하“시장”으로 한다)로 하고, 100분의 30”을 “100분의 15”로 하고,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한다.

제4조 중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을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를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6조제4항”으로 하고, “은행법 제5조에 의한”은 “은행법 제2조제1항에 의한”으로 한다.

제6조 중 “영 제74조제1항”을 “영 제74조 1호”로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는 삭제한다.

1.~4.(현행과 같음)

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재난 예보
· 경보시설 설치로 한정) 및 보수·보강

6.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
경보시설 등 재난 예보·경보 시설

7.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8.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9.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10. 설해·수해대비 자재구입 및 장비의 임차 등
11.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12.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13.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측량
14.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제7조 제1항 중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를 “영 제74조1호마목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9조 제2항 2호중 “재난관리과 복구담당”을 “재난관리과 복구지원계장”으로 하고, 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로 하고, “비치하고”를 “갖추어두고”로 한다.

제10조 제2항 중 “인”을 “명”으로 하고, 제4항 중 “규정에 의한”을 “규정에 따라”로 하고,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제5항 중 “담당”을 “계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규정에 의한”을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기타”를 “그밖에”로 한다.

제13조 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지방재정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로 하고, 제2항제4호중 “기타”를 “그밖에”로 하며, 제3항 중 “의한”을 “따라”로 한다.

제14조 중 “관하여”는 삭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4조 (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군산시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 및 은행법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 -----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6조제4항 및 은행법 제2조제1항-----.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되어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해당-----) ① 해당-----따른-----. ②해당-----.

현행	개정안
제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 4. (생략)	제6조(기금의 용도) ----- --, 영 제74조1호에서 (삭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 4. (현행과 같음) 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재난 예보·경보 시설 설치로 한정) 및 보수·보강 6.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재난 예보·경보 시설 7.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8.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9.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10. 설해·수해대비 자재구입 및 장비의 임차 등 11.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12.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13.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측량 14.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등) ①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생략) ③ (생략)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등) ① 영 제74조1호마목의 규정에 따라 -----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9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건설교통국장 2. 기금출납원 : <u>재난관리과 복구담당<개정2007.01.30></u>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과 복구지원계장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군산시 소속 국장 또는 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복구지원담당이 된다.<개정2007.01.30>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1명을 포함한 10명 -----. ③ (현행과 같음) ④-----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정원 범위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복구지원계장이 된다.

현행	개정안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그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지방재정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그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산시 공고 제2011-1845호

「군산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1월 15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및 「재난구호 및 재난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 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를 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 가. 「재난구호 및 재난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6조 제8호의 재난지수 300 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한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재난지원금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함
- 나. 지원기준은 영 제9조 제1항을 준용하며 가구당 재난지수 30이상 300미만의 재난에 대하여는 재난지수당 1,000원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단체 또는 개인)는 **2011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군산시장(참조 : 재난관리과장 ☎ 450-4494, FAX: 450-6406, e-mail : seohyunki@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및 「재난구호 및 재난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 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가구 총 수입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란 군산시장이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 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지원 기준지수”이란 재난 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4. “재난지수”이란 지원 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와 영 제4조 제1호의 지원 항목별 지원 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5. “재난등급”이란 재난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가뭄, 황사 등의 기상특보(주의보, 경보를 말한다)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기상 예비특보 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

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수량, 풍속 등이 특보발령 기준을 초과한 경우

3. 기상특보 현상 없는 낙뢰 등으로 판정된 현상으로 말미암은 피해

4. 그 밖의 중앙 및 지역 재난안전 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제4조(지원 대상) 시장은 영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의 사유시설 피해와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도 영 제6조 3항에 의거 지방 자치단체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기준)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영 제9조 제1항을 준용하며 가구당 재난지수 30이상 300미만의 재난에 대하여는 재난지수당 1,000원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한다.

제6조(지원 제외)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6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재난지수 30미만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재해발생 사실의 신고 등) ① 제6조에 따라 재난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시 소관시설별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 ① 시장은 제7조 제3항에 따라 읍·면·동장으로부터 피해 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 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재난지원금의 반환) ① 시장은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을 경우에 반환 의무자가 기한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고시 제2011-73호

도시계획시설(공원:실내배드민턴장) 실시계획 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공원:운동시설-실내배드민턴장)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문화체육과 450-4254)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1년 11월 4일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수송동 701-1번지 외 12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면적 및 규모

구 분	시 설 명	결 정(m ²)	실시계획(m ²)	비 고
공간시설	새들공원 (근린공원 6) 운동시설-실내배드민턴장	139,157m ²	4,591m ²	
소 계			4,591m ²	

4. 사업시행자

- 1)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번
- 2)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 (문화체육과)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1. 9. ~ 2012.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등 : 붙임조서 참조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8.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이름	주소	이름	주소	권리 내용	
1	수송동	710-1	전	217	217	군산시					
2	수송동	710-2	전	105	105	채규인외 1인	군산시수송동 742				나정식
3	수송동	710-3	전	225	225	이윤식외 1인	전주시 덕진구 인후1가 신우@9/203				이충훈
4	수송동	711-2	전	861	861	군산시					
5	수송동	703	전	698	698	군산시					
6	수송동	701-8	전	501	501	군산시					
7	수송동	701-9	전	445	445	재무부					
8	수송동	702-12	전	232	232	두복덕외 2인	군산시수송동 742	군산시, 성북세무소		압류	전양자 군산시
9	수송동	711-1	대	64	64	서우석외 1인	서울송파구 문정동27-2	전속자	옥구읍 수산리97	가등기 가압류	군산시
10	수송동	701-1	임	694	694	군산시					
11	수송동	702-13	임	358	358	군산시					
12	수송동	702-14	임	127	127	군산시					
13	수송동	788	공원	1184.2	64	군산시					
계		13필지		5,711.2	4,591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

군산시 고시 제2011-76호

회현면 대정2지구경지정리(38점), 미장지구기준점설치(6점), 성산면 689-1번지 경계측량(3점),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사업에 따른 지적도근점(47점) 측량성과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1년 11월 일

군 산 시 장

지적측량기준점			BESSEL		GRS 80					토지소재	설치 년월일	측량성과 보관장소
			평면직각 종횡선수치				표고 (m)	위도	경도			
명칭	번호	원점명	X(m)	Y(m)	X(m)	Y(m)						
지적 도근점	51734	중부	268238.33	176393.04	368544.834	176465.532	29.63	35°54′50.7″	126°44′21.3″	회현면 대정리 526-6	11.4.6	토지정보과
“	51735	“	268260.28	176692.15	368566.783	176764.641	29.42	35°54′51.5″	126°44′33.2″	회현면 세장리 590-3	“	“
“	51736	“	268166.57	176548.34	368473.076	176620.829	28.04	35°54′48.4″	126°44′27.5″	회현면 대정리 797	“	“
“	51737	“	268013.58	176389.59	368320.087	176462.090	28.32	35°54′43.4″	126°44′21.2″	회현면 대정리 797	“	“
“	51738	“	267845.34	176522.40	368151.848	176594.897	28.68	35°54′38.0″	126°44′26.5″	회현면 대정리 794	“	“
“	51739	“	267976.85	176658.55	368283.362	176731.047	28.23	35°54′38.0″	126°44′31.9″	회현면 대정리 799	“	“
“	51740	“	268122.06	176813.39	368428.567	176885.888	28.32	35°54′47.0″	126°44′38.1″	회현면 대정리 794	“	“
“	51741	“	268293.61	176991.33	368600.127	177063.821	28.58	35°54′58.6″	126°44′45.2″	회현면 대정리 794	“	“
“	51742	“	268291.65	177291.86	368598.174	177364.350	30.02	35°54′52.5″	126°44′57.1″	회현면 대정리 274-4	“	“
“	51743	“	268141.70	177135.95	368448.514	177208.439	28.30	35°54′50.9″	126°44′50.9″	회현면 대정리 800	“	“
“	51744	“	267974.48	176961.82	368280.997	177034.318	28.22	35°54′42.2″	126°44′44.0″	회현면 대정리 800	“	“
“	51745	“	267832.82	176815.24	368139.335	176887.740	28.24	35°54′37.6″	126°44′38.2″	회현면 대정리 800	“	“
“	51746	“	267676.18	176969.08	367982.700	177041.585	28.35	35°54′32.5″	126°44′44.3″	회현면 대정리 794	“	“

지적측량기준점			BESSEL		GRS 80					토지소재	설치 년월일	측량성과 보관장소
			평면직각 중형선수치				표고 (m)	위도	경도			
명칭	번호	원점명	X(m)	Y(m)	X(m)	Y(m)						
지적 도근점	51747	중부	267816.59	177114.97	368123.106	177187.468	28.42	35°54'37.1"	126°44'50.1"	회현면 대정리 794	11.4.6	토지정보과
“	51748	“	267985.46	177288.68	368261.982	177361.173	28.52	35°54'42.6"	126°44'57.0"	회현면 대정리 794	“	“
“	51749	“	268132.00	177446.57	368438.523	177519.060	30.40	35°54'47.4"	126°45'03.3"	회현면 대정리 794	“	“
“	51750	“	268254.96	177556.99	368561.488	177629.472	30.82	35°54'51.5"	126°45'07.7"	회현면 대정리 134-3	“	“
“	51751	“	268218.22	177663.27	368524.749	177735.754	30.97	35°54'50.2"	126°45'12.0"	회현면 대정리 738-4	“	“
“	51752	“	267805.04	177406.27	368111.569	177478.769	28.43	35°54'36.7"	126°45'01.8"	회현면 대정리 805	“	“
“	51753	“	267660.61	177257.40	367967.129	177329.901	28.29	35°54'32.0"	126°44'55.8"	회현면 대정리 805	“	“
“	51754	“	267551.03	177143.24	367857.554	177215.745	28.22	35°54'28.5"	126°44'51.3"	회현면 대정리 805	“	“
“	51755	“	267381.67	176967.22	367688.186	177039.732	28.49	35°54'23.0"	126°44'44.3"	회현면 금광리 1319	“	“
“	51756	“	267227.98	177115.25	367534.499	177187.758	28.15	35°54'18.0"	126°44'50.2"	회현면 금광리 1319	“	“
“	51757	“	267368.54	177262.73	367675.061	177335.236	28.31	35°54'22.6"	126°44'56.1"	회현면 금광리 1312	“	“
“	51758	“	267511.43	177409.39	367817.962	177481.890	28.58	35°54'27.2"	126°45'01.9"	회현면 금광리 1312	“	“
“	51759	“	267642.70	177549.53	367949.233	177622.029	30.19	35°54'31.5"	126°45'07.5"	회현면 금광리 1319	“	“
“	51760	“	267387.33	177532.69	367693.858	177605.193	30.62	35°54'23.2"	126°45'06.8"	회현면 금광리 1256	“	“
“	51761	“	267255.11	177406.74	367561.643	177479.246	29.39	35°54'18.9"	126°45'01.8"	회현면 금광리 1256	“	“
“	51762	“	266550.88	176843.61	366857.407	176916.139	28.11	35°53'56.0"	126°44'39.4"	회현면 월연리 581-1	“	“
“	51763	“	266479.64	176664.94	366786.159	176737.474	27.91	35°53'53.7"	126°44'32.3"	회현면 월연리 580	“	“
“	51764	“	266455.05	176520.50	366761.564	176593.030	27.92	35°53'52.9"	126°44'26.2"	회현면 월연리 580	“	“
“	51765	“	266430.46	176377.34	366736.973	176449.871	28.03	35°53'52.1"	126°44'20.9"	회현면 월연리 580	“	“
“	51766	“	266303.23	176510.52	366609.746	176583.057	27.92	35°53'47.9"	126°44'26.2"	회현면 월연리 11-10	“	“
“	51767	“	266122.94	176284.76	366429.458	176357.296	27.97	35°53'42.1"	126°44'17.2"	회현면 월연리 632	“	“
“	51768	“	266306.92	176252.56	366613.429	176325.093	28.04	35°53'48.0"	126°44'15.9"	회현면 월연리 632	“	“
“	51769	“	266511.74	176217.96	366818.252	176290.494	28.15	35°53'53.7"	126°44'14.5"	회현면 월연리 632	“	“
“	51770	“	266276.76	176069.95	366583.270	176142.490	28.32	35°53'47.0"	126°44'08.6"	회현면 월연리 630	“	“
“	51771	“	266290.40	175902.80	366596.907	175975.341	28.14	35°53'47.5"	126°44'02.0"	회현면 월연리 628	“	“
“	51772	“	273773.92	174915.83	374080.361	174988.266	6.69	35°57'50.2"	126°43'21.8"	미장동 54.39	11.5.1 2	토지정보과

지적측량기준점			BESSEL		GRS 80					토지소재	설 치 년월일	측량성과 보관장소
			평면직각 종횡선수치				표고 (m)	위 도	경 도			
명 칭	번 호	원점명	X(m)	Y(m)	X(m)	Y(m)						
지적 도근점	51773	중부	273801.74	175139.20	374108.194	175211.641	5.97	35°57'51.1"	126°43'30.7"	미장동 56-28	11.5.12	토지정보과
“	51774	“	273775.38	175297.92	374081.829	175370.355	6.44	35°57'50.3"	126°43'37.0"	미장동 57-57	“	“
“	51775	“	273529.02	175267.84	373835.477	175340.283	6.45	35°57'42.3"	126°43'35.8"	미장동 481	“	“
“	51776	“	273526.87	175124.57	373833.325	175197.015	6.29	35°57'40.2"	126°43'30.1"	미장동 481	“	“
“	51777	“	273536.30	174963.67	373842.746	175036.110	6.40	35°57'42.5"	126°43'23.7"	미장동 476	“	“
“	51778	“	279366.85	180939.64	379673.464	181012.043	58.36	36°00'52.1"	126°47'21.7"	성산면 여방리 688	11.4.4	토지정보과
“	51779	“	279034.06	181110.34	379340.671	181182.750	22.98	36°00'41.3"	126°47'28.5"	성산면 여방리 656	“	“
“	51780	“	278759.23	181070.83	379065.849	181143.239	22.22	36°00'32.4"	126°47'27.0"	성산면 여방리 604	“	“

군산시 공고 제2011-1752호

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군산대교차로)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전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군산대교차로)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전 열람을 실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군 산 시 장

2011년 11월 4일

1.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2. 공람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건설과
3. 실시계획인가 신청요지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신관동, 미룡동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군산대교차로)
 - 2) 명 칭 : 군산대 교차로 개선공사
 -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 분	시 설 명	결 정	실시계획			비 고
			기조성	금회	미조성	
교통광장	광장 12 (군산대교차로)	57,212㎡	50,418㎡	5,771㎡	1,023㎡	- 교통광장 개선
도 로	광로 2-1 (국도21호선)	연장 16,755m 폭원 50m	연장 16,755m 폭원 30m	기존도로 정비 2,488㎡	연장 16,755m 폭원 20m	램프 2개 ⇒ 3개 변경 - 광로 정비
도 로	대로 1-5 (대 학 로)	연장 2,585m 폭원 35m ~ 45m(일부구간)	연장 2,585m 폭원 35m	가급속차로 설치 941㎡	미개설 없음	기존도로(가속차로) 정비 - 대로 확장
소 계				9,200㎡		일부구간 가급속차로 신설

- 라.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1)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
 - 2)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건설과)
-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1. 11. ~ 2014. 12. 31.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조서 참조
4.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450-4447) 및 건설과(450-4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순 번	지 번	지목	지 적 (㎡)	편 입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권리 내용	
1	신관동 41-8	답	1,428	1		국(교육인적자원부)			광장
2	신관동 41-15	도	1,134	114		국(건설교통부)			"
3	신관동 41-16	도	947	376		국(건설부)			"
4	신관동 41-22	도	167	48		국(건설교통부)			"
5	신관동 41-23	답	269	262		국(건설부)			"
6	신관동 41-24	도	14	14		국(건설부)			"
7	신관동 41-38	답	8	2	이삼세	군산시 소룡동 1393-70			"
8	신관동 42-80	도	578	50		국(농수산부)			"
9	신관동 42-93	구	45	45		국(농수산부)			"
10	신관동 42-156	구	19	19		국(교육과학기술부)			"
11	미룡동 287-5	답	928	795	이정희	서울마포구성산동 256-12 이레셰르빌 301	군산신용 협동조합, 최민규	근저당 지상권	"
12	미룡동 287-26	도	1,388	6		국(건설부)			"
13	미룡동 287-29	도	1,081	3		국(건설부)			"
14	미룡동 287-30	도	1,006	223		국(건설부)			"
15	미룡동 287-35	도	172	41		국(농수산부)			"
16	미룡동 287-36	구	226	2		국(농수산부)			"
17	미룡동 287-40	도	232	92		국(건설부)			"
18	미룡동 287-41	도	396	195		국(건설부)			"
19	미룡동 287-42	도	135	74		국(건설부)			"
20	미룡동 287-43	도	466	294		국(건설부)			"
21	미룡동 287-44	도	204	204		국(건설부)			"
22	미룡동 287-50	도	24	24		국(농수산부)			"
23	미룡동 287-57	답	1,002	33		군산시			"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순 번	지 번	지목	지 적 (㎡)	편 입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권리 내용	
24	미룡동 287-58	답	1,603	160		군산시			광장
25	미룡동 287-59	답	55	55		군산시			"
26	미룡동 287-60	도	69	69		국(건설교통부)			"
27	미룡동 287-61	도	23	23		국(건설교통부)			"
28	미룡동 287-62	도	102	102		국(건설교통부)			"
29	미룡동 287-63	도	65	65		국(건설교통부)			"
30	미룡동 287-64	구	17	17		국(농수산부)			"
31	미룡동 287-66	답	9	1	박종자	군산시 미룡동 287-65			"
32	미룡동 287-68	답	277	123	최민규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247-9	군산신용 협동조합, 최민규	근저당 지상권	"
33	미룡동 287-69	답	862	769		국(교육과학기술부)			"
34	미룡동 287-70	답	349	349	윤종백	군산 나운동 866-1 유원@3동606호	(주)한일상호 저축	근저당,지 상권	"
35	미룡동 287-71	답	700	700	심재복	옥구군 미면 신관리 194			"
36	미룡동 287-72	답	80	80	이삼세	군산시 소룡동 1393-70			"
37	미룡동 287-74	답	327	327		국(교육과학기술부)			"
38	미룡동 287-75	답	14	14	박종자	군산시 미룡동 392			"
	소계	38 필지		5,771					광장
39	신관동 41-14	도	635	314		국(건설부)			광로
40	신관동 41-15	도	1,134	356		국(건설교통부)			"
41	신관동 41-17	도	394	38		국			"
42	신관동 41-21	도	44	44		국(건설부)			"
43	신관동 41-22	도	167	111		국(건설교통부)			"
44	신관동 41-28	도	34	6		국(건설교통부)			"
45	신관동 41-31	도	16	8		국(재정경제부)			"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순 번	지 번	지목	지 적 (㎡)	편 입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권리 내용	
46	신관동 41-32	답	28	27		국(교육과학기술부)			광로
47	신관동 41-33	답	14	1		국(건설교통부)			"
48	신관동 42-80	도	578	39		국(농수산부)			"
49	신관동 42-120	구	15	8		국(농수산부)			"
50	신관동 130-1	도	618	163		국(건설부)			"
51	신관동 130-5	도	277	167		국(건설교통부)			"
52	신관동 131-2	도	1,326	309		국(건설부)			"
53	신관동 135-1	도	823	196		국(건설부)			"
54	신관동 136-3	도	2	2		국(건설부)			"
55	신관동 136-4	도	588	149		국(건설부)			"
56	신관동 136-7	도	18	9		국(건설교통부)			"
57	신관동 137-2	전	6	4		국(건설부)			"
58	신관동 137-4	도	13	8	문태녀	옥구군 미면 신관리 92			"
59	신관동 137-5	도	40	40		국(건설부)			"
60	신관동 137-6	도	384	65		국(건설부)			"
61	신관동 138-1	도	43	42	조환구				"
62	신관동 138-3	도	193	42		국(건설부)			"
63	신관동 139-1	도	20	3		국(농수산부)			"
64	신관동 139-2	도	506	26		국(건설부)			"
65	신관동 153-1	도	116	26		국(건설부)			"
66	신관동 154-1	도	114	65		국(건설부)			"
67	신관동 172-1	도	80	51		국(건설부)			"
68	신관동 173-1	도	93	68		국(건설부)			"
69	신관동 174-1	도	156	8		국(건설부)			"
70	신관동 941-18	도	394	93		국(건설부)			"
	소계	32 필지		2,488					광로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순 번	지 번	지목	지 적 (㎡)	편 입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권리 내용	
71	신관동 1-1	도	898	339		군산시			대로
72	신관동 1-2	학	136	136		국(교육과학기술부)			"
73	신관동 2-7	전	117	117	최태엽	서울 동작구 사당동 303-56			"
74	신관동 2-8	전	23	23	김용환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1012 한강우성@ 102-605			"
75	신관동 940-3	도	16	16		국(교육과학기술부)			"
76	미룡동 287-69	답	862	93		국(교육과학기술부)			"
77	미룡동 287-73	구	70	70		국(농수산부)			"
78	미룡동 315-5	도	25,237	147		군산시			"
	소계	8 필지		941					대로
	합계	78 필지		9,200					전체

군산시 공고 제2011-1775호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공고

군산시 공인조례 제17조에 의거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하고 같은 조례 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1. 15.

군 산 시 장

1. 공인 등록사유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2.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 연월일 : 2011. 11. 15.
3. 등록공인 및 인영(1건)

관 수 부 서	공 인 명	인 영
나운3동	나운3동장의인 민원사무전용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군장항 항로준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초안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07일

군 산 시 장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군장항 항로준설사업
- 나. 사업시행자 : 군산지방해양항만청
- 다. 사업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장항항 내
- 라. 사업내용 : 준설량 31,318천 m^3

2.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 가. 공람기간 : 2011. 11. 7 ~ 2011. 11. 29 (신문공고일로부터 20일간)
- 나. 공람장소 : 군산시청 환경위생과,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군산시 소룡동사무소, 미성동사무소, 서천군 장항읍사무소

3. 주민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구분	주민설명회		비 고
	일 시	장 소	
주민 설명회	2011년 11월 14일(월) 14:00~16:00	소룡동사무소	군산시
	2011년 11월 14일(월) 10:00~12:00	장항읍사무소	서천군

4. 주민의견서 제출

- 가. 제출기한 : 2011. 11. 29 ~ 2011. 12. 5(공람만료일로부터 7일이내)
- 나.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
- 다. 제출장소 : 상기 공람장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환경위생과(063-450-6166),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63-441-227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